

부산직할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동조 제3항중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11조의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3백만원 이상인 물품”을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 (안)
<p>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생략)</p> <p>② 분입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 이력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2의 규정에 의한 <u>중요물품 및 정수물품</u>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u>중요물품</u>" 및 "<u>정수물품</u>"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p> <p>③-④(생략)</p>	<p>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생략)</p> <p>②</p> <p>.....</p> <p>.....</p> <p>..... <u>정수물품에</u></p> <p>.....</p> <p>정수물품</p> <p>.....</p> <p>③-④(생략)</p>